

이젠HRD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① 이 규정은 (주)이젠커뮤니케이션즈(이하 “교육원”이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훈련과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훈련과정 개발

제2조【 수요조사의 실시 】

- 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수요조사 결과는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의 설계유형, 개발시기, 과정선정, 매체개발 등에 활용한다.

제3조【 과정 선정 】

- ① 학습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과정개발 선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선정된 교육훈련 과정은 산업현장의 내용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훈련 콘텐츠를 집필한다.
- ③ 기타 과정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내용전문가 】

- ① 내용전문가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직무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정 설계 시 전체적인 학습목표와 교수내용을 교과내용에 맞춰 설계 및 강의를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내용전문가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1]」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선발한다. 다만,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개발과정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 1.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2.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③ 내용전문가는 내용전문가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1부 이상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내용전문가는 교·강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교·강사 】

- ① 교·강사는 과정 운영시 학습에 대한 안내자, 촉진자, 코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그 자격기준은 내용전문가 자격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 ② 훈련과정별 교·강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월별 훈련생 평균인원은 500명 이내로 정한다.

제6조【 콘텐츠의 개발 】

- ①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는 자체 개발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
- ②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 개발은 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개발매뉴얼을 준용 한다.
- ③ 타 기관과의 교류, 협력, 구매 등을 통해 기 개발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임대하여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제7조【 콘텐츠의 관리 】

- ①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의 기본 유효기간은 2년이며, 2년이 지난 콘텐츠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하거나 업데이트 및 수정 개발할 수 있다.

제3장 훈련과정 운영

제8조【 운영계획 】

- ① 교육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운영계획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의거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되, 훈련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기간은 수강신청기간(취소기간 포함), 교육실시(학습)기간, 교육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하고 과정별 교육기간은 매월 1일부터 하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나 사업주의 요청에 따른 경우 기관장의 승인 하에 조정 할 수 있다.
- ③ 익년도 교육 운영계획, 일정 및 세부사항은 연말까지 수립하여, 사업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이듬해 초에 훈련생 홈페이지(www.ezenhrd.net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제9조【 훈련과정 】

- ① 교육원의 훈련과정은 "환급과정" 과 "비 환급과정"으로 구분한다.
 - 1. 환급과정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 중 운영일 현재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은 과정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3조」에 따라 훈련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 과정
 - 2. 비 환급과정 : 환급과정 이외의 과정
- ② 훈련과정별 훈련대상, 훈련비용, 훈련기간, 훈련목표 등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훈련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등록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훈련생 자격 】

- ① 환급과정으로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자여야 한다.
- ② 원격훈련과정심사 결과에 따른 대상한정 훈련과정일 경우 인정받은 대상으로 한정한다.

제11조【 위탁교육 계약 절차 】

- ① 본 교육원과 업체의 위탁교육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서류는 [위탁계약서 2부, 훈련생명부 1부]로 한다.
- ② 위탁계약서와 비용지원신청서는 원본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계약서의 경우 2부를 작성하여 업체와 본 시설이 각 1부씩 원본 보관한다.
- ③ 업무상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12조【 수강신청 】

- ① 수강신청은 본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본 교육원은 사업주로부터 제출 받은 '훈련생명부'를 검토해 훈련생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② 훈련개시일 전일까지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실시시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훈련기간 】

- ① 본 교육원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은 과정 당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훈련과정심사 결과에 따라 훈련기간이 상이할 경우 심사결과에 따른 훈련기간을 준수한다.

제14조【 학습방법 및 진도관리 】

- ① 훈련생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강 신청한 훈련과정을 학습한다.
- ② 온라인 교육과정의 학습시간은 온라인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훈련생 스스로 시간, 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 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에 따라 1일 진도제한에 따라 1일 8차시 이하의 학습만 진도율로 인정한다.
- ④ 훈련생 본인이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 ⑤ 교육훈련전담자는 훈련생의 학습 진행상황, 훈련과 관련된 학습 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1일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 ⑤ 교육훈련전담자는 전자우편 발송, SMS 문자 등의 방법으로 학습 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하고 관리한다.

제15조【 교육평가 】

- ① 훈련과정별 평가는 다음 각 호로 이루어진다.
 1. 진도율 : 각 차시별 콘텐츠 기준시간과 훈련시간 비교하여 100% 인정시 출석 인정
 2. 진행단계 평가 : 진도율 50% 이상시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내용 점검(1회)
 3. 최종단계 평가 : 시험 또는 과제(복수 가능) 형태로 진도율 80%이상 진행시 응시가능
- ② 평가시험은 산업인력공단 사업주환급과정 평가응시 규정에 의거하여 단 1회 응시만 가능하며, 이는 학습자가 볼 수 있도록 공지사항을 띄워 사전에 공지한다.
- ③ 훈련생은 제한시간 내에 객관식/주관식 시험을 완료해야 하며 미응시, 시간초과의 사유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 과실 및 공지사항 미숙지로 판단하여 재응시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④ 훈련과정별 평가기준은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6조【 수료기준 】

- 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생의 수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성적이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일 것.
 2. 학습진도율이 100분의 80 이상일 것. 다만,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1호, 2호 이외에 훈련과정별 심사결과에 따른 수료기준에 도달 할 것.
- ② 훈련과정별 수료기준은 훈련생이 확인 가능하도록 게시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료증 발급 】

- ① 훈련생이 본 교육원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사업주가 요청할 경우 일괄 발급 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훈련비의 환불 】

- ① 훈련비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 환급과정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과정
 - 교육시작 1일 전까지 취소(또는 변경) 의사를 통보할 경우 → 전액 환불 및 교육일 변경 가능
 - 교육 당일 취소(또는 변경) 의사를 통보할 경우 → 환불 불가 및 교육일 변경 가능
 - 교육 당일 취소(또는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교육에 불참한 경우 → 환불 및 교육일 변경 불가
 2. 비환급과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른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 훈련자격 박탈 】

수강자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사항일 때에는 훈련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①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④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키는 경우.
- ⑥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⑦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⑧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20조【 운영 방식 】

- ① 본 교육원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On-line 강의 이루어진다
- ② 훈련생 상담이나 질문사항은 Q&A 게시판, 실시간 상담, 유선 상으로 이루어진다.

제4장 훈련과정 보고

제21조【 훈련실시신고 등 】

-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훈련과정의 훈련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훈련개시일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공휴일이 아닌 날로 한다)의 오후 6시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훈련실시신고 사항 중 훈련생 명단은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훈련개시 전
 2. 훈련일수가 3일 이상 10일 미만인 경우: 훈련개시일
 3. 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훈련 개시 후 2일 이내
 4. 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경우: 훈련 개시 후 7일 이내
 5. 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훈련과정: 훈련 개시 후 14일 이내
- ④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훈련생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수강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훈련수료보고 】

- ①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HRD-Net을 통하여 수료보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훈련결과에 대한 사항은 LMS내 적재하여야 하며,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
- ③ 평가성적 60점 이상 학습진도율 80% 이상(1일 학습시간은 8시간 초과불가)에 해당하는 자는 수료처리 한다.

제23조【 훈련비용 지원신청 】

- ① 훈련비용 산정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다.
1. 수료한 1인당 = 원격훈련 기준단가×훈련시간×사업장 규모별 훈련비 지원률×조정계수
- ② 원격훈련 기준단가는 다음 표에 의한다.

훈련과정 심사 등급	인터넷	스마트		우편
		교수설계유형	기술기반유형	
A	5,600	11,000	16,500	3,600
B	3,800	7,400	11,100	2,800
C	2,700	5,400	8,100	1,980

- ③ 우선지원대상(자체훈련 100%, 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대규모(80%), 1,000인 이상(40%) 기업으로 구분, 단, 직무법정훈련은 우선지원대상(50%), 대규모(40%), 1,000인 이상(20%) 지원한다.
- ④ 조정계수는 해당훈련과정과 유사한 훈련(NCS소분류 기준)의 공급정도에 따라 결정하되, 직무법정훈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8.03.01.이후 시행한다.
- ② (준용규칙) 이 운영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사항은 동 규정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